

여성농업인 육성 2차 5개년 계획 수립과 지역 여성농민 실태와 제언

정 영 태*

목 차

- I. 서론
- II. 여성농업인 육성 계획
- III. 제주여성농업인 실태
- IV.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I. 서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은 농업생산자, 돌봄노동 담당자, 지역사회 주민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성의 다양한 역할 변화는 1960년대 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산업화·도시화는 물론, 논벼위주에서 채소·과수·화훼 등 원예작목 중심으로 영농의 변화 등 농업과 농촌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영향을 받아왔다.

농촌의 청장년층이 도시로 이동하고 농업 노동력의 절대적 감소와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여성이 생산자로서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농가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 미만으로 2004년 7.1%를 차지함에 따라 여성이 농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노동력으로 등장하였다.

* 제주발전연구원

여성의 노동력이 농업생산에 투입되면서 전통적인 농촌가정의 기능은 약화되었으나, 여성을 중심으로 돌봄노동은 전통적 가부장제의 의식의 잔존으로 여성이 전담함에 따라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농촌 사회가 도시에 비해 제반 여건의 낙후 등으로 교육 문화 복지 의료 시설 등의 소외는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정주기반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여성의 농업생산의 참여, 돌봄노동 등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은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여성은 무임 가족노동자로서 일시적인 동원이 용이한 농업 보자자로서, 단순 노동을 제공하는 주변적 노동력으로 간주되어, 전문적이 농업인력, 평등한 가족구성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조합원 등 지역주민으로서 인정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은 생활만족도가 매우 낮으며 도시 실업자보다 더 낮게 보고되고 있다. 농업이 지니고 있는 주변적 위치와 농촌의 사회 문화적 후진성 등 일반적 요인과 함께 농촌 내에서도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입장이 바로 여성의 위치이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농업·농촌의 정보화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소프트웨어적인 농업기반의 마련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개방화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본집약적인 농업, 기술 농업 중심으로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1995년 제4차 북경여성대회를 기점으로 정부의 모든 영역에 도입되기 시작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전략은 여성농업인에게도 그들을 위한 적극적인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반 여건을 제공하게 하였다. 1998년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설치, 2000년 「농업·농촌기본법」 발효 및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2001~2005)」 수립, 「여성정책 기본계획 20대 과제¹⁾」에 여성농업인의 부담 완화와 권익 신장을 포함 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등장하였다.

1) 여성정책 기본 계획은 1998년 수립되었으며 20대 과제 주요 과제를 선정하였다.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법·제도 및 의식의 개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고용기회균등기반의 확립, 여성고용의 촉진, 직장-가정양립 지원체제 확립, 여성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남녀평등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 여성전문인력의 적극적 양성, 여성의 평생교육 지원, 여성의 건강증진 및 성비불균형 해소, 보육사업의 확충 및 내실화, 여성농업인의 부담완화와 권익신장,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 고령화시대의 여성복지 증진,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 여성자원봉사활동 등 시민운동 지원, 여성단체활동 지원, 여성의 국제협력 강화, 통일에의 기여 등이다.

특히 2006년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06.1.1)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도 자체 여성농업인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여성농업인 육성업무가 한층 강화 될 예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1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과 제2차 여성농업육성 5개년 계획(안)을 살펴보고 제주 지역 여성 농민을 위한 지자체 수준의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을 준비하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여성농업인 육성 계획

1. 제1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배경

제1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이 수립된 배경은 그간 여성농업인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출발하였다. 1999년 당시 농업주종사자의 52.5%가 여성농업인이 152만명, 여성농업주종사자가 123만명으로 실질적인 농업생산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농가주부나 가족농체제하의 보조적 인력, 즉 '보이지 않는 농민'으로 인식해 적극적인 농정의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또한 주요 의사 결정과정에 있어 여성농업인이 소외됨에 따라 그들의 풍부한 경험과 통찰력이 사장되고 여성 스스로가 전문 농업인으로서의 성취감과 자존감을 획득하지 못하였다. 자녀 양육 및 교육, 노인부양 등 여성의 가정 내 역할을 여성농업인이 전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원 하는 사회서비스의 부족과 전문적인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 부족은 여성농업인을 낮은 지위에 머물게 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와 1995년 출범한 WTO는 적정 규모 중심으로 농업구조개선정책을 추진하게 하였다. 따라서 중소농과 여성, 고령 농업인 등에 다양한 농촌 현실에 대한 정책의 부재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여성·고령농업인을 정책의 대상에서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제적 차원의 여성농업인 정책 또한 여성농업인을 소외계층으로 인식하여 사회발전의 수혜자로 만들기 위한 WID적 정책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제4차 북경 세계여성대회(1995)를 계기로 수혜적 · 특수주의적 여성정책에서 벗어나 여성을

참여시키고 사회발전의 주체로 여성이 재인식되었다. 북경대회는 GAD적 전략의 수립에 따라 행동강령을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전략으로 채택하여 젠더주의 관점이 정책에 드디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세계농업기구(FAO) 역시 1995년 제28차 회의에서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여성발전을 위한 FAO 행동계획(FAO Plan of Action for Woman in Development)²⁾’을 채택하였다. 생산자원에 대한 접근과 통제에 있어서 남녀간의 형평성을 증진하고,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과 정책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향상시키며, 농촌여성의 노동부담을 줄이고 취업기회와 수입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우리나라 또한 북경여성대회 영향으로 6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되면서 1998년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여성의 관점에서 모든 농업정책을 점검·평가하고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여성농업인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부터 추진하게 되었다.

2. 제1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내용과 추진실적

1999년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의 제 14조에서 여성농업인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가 별도로 명시되었다. 시행령 제7조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의 수립·시행이 규정되었다.

이 법을 바탕으로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훈련, 농업경영활동에 있어 차별적 요인을 제거하고, 여성농업인을 위한 세부정책과 추진과제가 마련되었다.

제1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은 21세기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남녀파트너십 정착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촉진,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새로운 농업환경에의 도전역량 강화, 여성농업인을 위

2) FAO행동계획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FAO의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에 여성의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기본틀의 구축이다. 이를 위하여 생산자원에 대한 접근과 통제에 있어서 남녀간의 형평성을 증진하고,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과 정책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향상시키며 농촌여성의 노동부담을 줄이고

한 영농지원체계 정비, 여성농업인 정책의 실현을 위한 농정시스템 구축 등 5가지 추진방향의 설정과 그에 따른 22개의 기본 정책과제를 다음 <표1>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1> 제1차 여성농업인 육성 추진방향과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

5대 추진방향	22개 정책과제	세부과제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지위향상 촉진 (4)	1-1. 농정결정에의 여성참여 확대	<input type="checkbox"/> 농림관련 전문여성 D/B 구축 <input type="checkbox"/> 기존위원회의 여성참여율 제고 <input type="checkbox"/>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 설치
	1-2. 농협내 여성의 대표성 제고	<input type="checkbox"/> 여성의 조합가입 촉진(여성비율) <input type="checkbox"/> 여성대의원, 이사 할당제 - 여성대의원 목표비율 - 여성임원수 목표비율 <input type="checkbox"/> 여성조합장 선출모델 개발 및 확산 <input type="checkbox"/> 여성복지사업의 활성화 <input type="checkbox"/> 농협 직원·대의원 대상 성인지 훈련
	1-3. 남녀평등의식교육의 확산	<input type="checkbox"/> 남성/고령여성 농업인 의식교육프로 그램 개발·보급 <input type="checkbox"/> 의식개혁과 역할공유 촉진 책자 발간 <input type="checkbox"/> 강사은행 도입 및 운영 <input type="checkbox"/> 남녀평등의식교육 수료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input type="checkbox"/> 여성농업인 세대간 이해증진 행사개최
	1-4. 여성농업인의 사기진작 및 직업의식 고취	<input type="checkbox"/> 여성농업인 대회 <input type="checkbox"/> 신지식여성농업인 100명 발굴 <input type="checkbox"/> 선진해외농업연수 참가 지원 <input type="checkbox"/> 국제행사 참가 지원 <input type="checkbox"/> 여성농업인 리더쉽 교육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4)	2-1. 여성후계농업인의 확대	<input type="checkbox"/> 여성후계농업인 확대
	2-2. 여성 생산자조직의 육성	<input type="checkbox"/> 여성 생산자조직 육성

5대 추진방향	22개 정책과제	세부과제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4)	2-1. 여성후계농업인의 확대	<input type="checkbox"/> 여성후계농업인 확대
	2-2. 여성 생산자조직의 육성	<input type="checkbox"/> 여성 생산자조직 육성
	2-3.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시스템 구축	<input type="checkbox"/> 교육종합정보체계의 구축 <input type="checkbox"/> 여성농업경영교육프로그램 개발 <input type="checkbox"/> 여성농업인경영자반 <input type="checkbox"/> 여성농업인강사반 <input type="checkbox"/> 전문영농기술교육 <input type="checkbox"/> 최고경영자 과정 지원 <input type="checkbox"/> 여성농업인(사이버)대학 설립지원 <input type="checkbox"/> 영농 인증제 도입
	2-4. 여성농작업의 기계화·자동화	<input type="checkbox"/> 여성용 농기계의 개발 및 개량 <input type="checkbox"/> 농기계 보급 확대
새로운 농업환경에의 도전역량 강화 (3)	3-1. 여성농업인의 정보활용 능력 강화	<input type="checkbox"/> 여성농업인 정보화 교육기회의 확충 <input type="checkbox"/> 정보컨텐츠개발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정보화마인드 확산 <input type="checkbox"/> 농업기술지도를 위한 원격시범사업
	3-2. 여성농업인 창업자금의 신설	<input type="checkbox"/> 여성농업인 창업자금의 신설
	3-3. 농업관련 산업진출을 위한 여성인력양성	<input type="checkbox"/> 농업유관분야 청년여성인력 양성 <input type="checkbox"/> 농업계고교 교육과정 개편
여성농업인을 위한 영농지원체제 정비 (5)	4-1. 농가도우미제의 확대	<input type="checkbox"/> 농가도우미 확대
	4-2. 자녀보육서비스의 확충	<input type="checkbox"/> 농촌보육시설 지원 <input type="checkbox"/> 공립병설유치원 확충 <input type="checkbox"/> 보육지원 대상 확대 <input type="checkbox"/> 농촌형 보육프로그램 개발
	4-3. 교육지원서비스의 강화	<input type="checkbox"/> 농촌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input type="checkbox"/> 편모농업인자녀 인문계고교 학자금 지원 <input type="checkbox"/> 방과후 프로그램의 확대 지원 <input type="checkbox"/>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현실화
	4-4.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체계 구축	<input type="checkbox"/> 보건소의 무료검진사업과 질병예방 교육의 실시 및 물리치료실 설치 <input type="checkbox"/> 이동순회서비스 향상 <input type="checkbox"/> 여성농업인의 보건관련 위원회 참여 제고
	4-5. 여성농업인 발전센터의 건립 및 운영지원	<input type="checkbox"/> 여성농업인 발전센터 건립 및 운영지원

5대 추진방향	22개 정책과제	세부과제
여성농업인정책의 실현을 위한 농정시스템 구축 (6)	5-1. 농림관련 법령 정비	<input type="checkbox"/> 농림관련 법령 정비
	5-2. 농림부 여성정책담당부서의 기 능 강화	<input type="checkbox"/>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정책개발기능강화 <input type="checkbox"/> 농림부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여성농정 평가
	5-3. 지방자치단체와의 효율적 정책 전달체계 구축	<input type="checkbox"/> 여성농업인정책 담당부서의 설치 <input type="checkbox"/> 농정분야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
	5-4. 정책개발 인프라의 확충	<input type="checkbox"/> 정책개발·기초연구의 확대 <input type="checkbox"/> 기초 통계자료의 생산 <input type="checkbox"/> 농업정책에 대한 성분석 실시
	5-5. 여성농업인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input type="checkbox"/> 여성농업인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5-6. 여성농업인단체 활성화	<input type="checkbox"/> 활동영역의 발굴 <input type="checkbox"/> 예산지원규모의 증대 및 대상의 확대 <input type="checkbox"/> 정부사업의 민간이양

위와 같이 수립된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은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총괄·추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의견을 농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로 여성농업인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본부 관련 부서 및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농협, 교육부, 복지부 등 관련기관이 여성담당관실의 협조요청에 응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소관 부서 및 관련기관은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에 의하여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여성정책담당관실로 제출하고, 여성정책 담당관실이 세 제출된 세부시행계획을 검토·조정하여 총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추진실적은 소관 부서 및 관련기관이 전년도 세부추진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고, 당해연도 중간 추진실적을 매년 7월말까지 제출함으로써 시행결과의 점검·평가 및 실적관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차기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표2>와 같다.

<표2> 추진 기관 및 업무

소관부서 및 관련기관	농림부 여성정책 담당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세부시행 계획 수립 및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출된 세부시행계획 검토 · 조정 총괄 시행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세부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 매년 7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중간 추진 실적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결과 점검·평가 실적관리를 통한 문제점 개선·보완 차기 시행계획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고 성격 : paper 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류(feedback) 이루어지지 않음

그러나 제1차 여성농업인 육성5개년 계획은 5개 부분 22개 과제로 계획을 수립 하였으나 소관부서 및 관련기관의 현행 세부 시행계획들은 15개 과제별로 추진실 적과 계획이 제시되는 수준에 머물렀다. 각 과제의 추진실적은 <표3>과 같다.

<표3> 1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15개 핵심과제 추진실적

기본전략	핵심과제	세부사업	계획 대비 실적 (2001-2003)
1) 여성 농업인의 경영능력 강화	1. 여성농업인의 전문교육훈련	- 정보화 - 영농기술교육 - 전문농업경영교육	77천명 계획, 74천명 교육 214천명 계획, 117천명교육 4210명 계획, 2021명 교육
	2. 여성농업인 전문 교육시스템구축	- 여농교육방안연구 - 여농교관반 운영	평가유보
	3. 여성농업인 해외농업연수	- 해외선진농업연수	100명 목표, 53명 추진
	4. 후계여성농업인 육성	- 후계여성농업인	4,000명 계획, 929명 추진
	5. 여성농작업의 기계화 추진	- 발농사농기계개발 - 농기계현장접목	30종 목표, 25종 개발 13종 목표, 16종 추진
	6.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촉 확대	- 여성위원 확대	30% 목표, 35.9% 유지
	7 여성농업인의 협동조합 참여확대	- 여성조합원	40% 계획, 22.6% 유지 - 여성대의원 - 여성임원

기본전략	핵심과제	세부사업	계획 대비 실적 (2001-2003)
2)여성 농업인의 지위향상 촉진	8. 여성단체 위탁사업 활성화	- 국민안전식생활 교육 및 홍보 - 도농교류사업	1,350백만원 계획, 500백만원 지원 1,000백만원 계획, 470백만원 지원
	9. 여성농업인단체 활동 지원	- 각종 교육, 행사, 단체활동 지원	농림부(830백만원계획,255백만원지원) 농협(810백만원 계획, 167백만원지원) 농진청(800백만원계획, -)
	10. 여성농업인의 전문 직업의식 고양	- 여성농업인 대회지원 - 여성농업인 표창	550백만원 계획, 87백만원 지원 매년 10명 계획, 65명 표창실시
	11.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 여성농업인센터 설립 및 지원 확대	104억 목표, 32억 지원
3)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	12. 모자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 모자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3,400명에 100억 계획, 74,114명에 569억 지원
	13. 농가도우미제도 정착	- 농가도우미제의 정착	250억 계획, 52억 지원
4)여성 농업인 정책 시행구축	14. 여성농업인정책 과제의 개발연구	- 정책과제 개발연구	농림 470백만원 계획, 8개 과제 농진청 8개 계획,11과제 수행
	15. 여성농업인정책 추진체계 정비	-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 여성정책반 운영	12개 시·도 수립 3회에 118명 참여

*출처 :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중간평가. 농림부. 2005

비록 실질적으로 15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이 추진되어왔으나 기본계획은 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되어 여성농업인 육성법의 제정보다 앞서 시행되므로 여성농업인 정책이 국가 정책의 중요한 부문으로 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1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의 성과는 우선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정책대상자로 후계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여성 우대 제도를 채택하여 기존의 불평등 관행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둘째,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사회 참여가 확대되고 여성농업인을 전문직업인으로 인식하는 의식을 확산을 가져왔다.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위원의 증가로 여성농업인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가 확대되고, 협동조합의 여성조합원이 증가하면서 관련 규정의 개정이 요구되는 등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기반을 마련

하게 되었다. 여성농업인대회 개최, 우수 여성농업인 표창 등을 통해 직업인으로
 서 의식을 고양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였으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모델을 새롭게 제시하기
 도 하였다.

셋째,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의 완화와 삶의 질 향상으로 안정적 농촌 정주
 와 농업생산성을 제고하였다. 모자여성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
 득수준이 열악한 농업인에 대한 우대조치로 평가되었으며, 농가도우미의 확대는
 여성농업인의 재생산 노동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젊은 여성농업인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기반이 되었
 다.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중기 계획 수립되었으며, 관련 법령의 제
 정을 이룩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실태 조사를 통해 기초 자료의 생산과 여성농업
 인의 현안 문제가 정책화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결국 제1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은 출범초기 전담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출범하였음에도 두드러지는 몇몇 성과를 얻었으나 한계를 드러냈다. 궁극적으로
 영역의 목표가 지나치게 넓은 반면 사업의 구성은 미시적이었으며, 기존사업 중
 심의 계획으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업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역할 측면에서 여성농업인을 협업
 배우자 또는 공동경영주의 위치에서 필요한 경영능력 향상방안 등이 명확히 제시
 되지 못하였다.

3. 제2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안)

제1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농업·농촌을 둘러싼 환경이
 매우 급변하였다.

농산물의 수입개방이 확대되고 농산물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농
 가는 전문화와 규모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에 대
 한 국민적 합의가 증대하고 있다. 농산물의 소비 패턴의 다양화, 고급화, 안전식
 품 등 선호와 IT혁명에 따른 유통환경의 변화와 BT기술 도입으로 농업의 고부

가가치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는 추세이다. 농촌의 어메니티(amenity)³⁾, 참살이 등 생활의 새로운 가치가 등장함에 따라 농촌이 쾌적한 주거와 휴식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농업정책 대상이 농업·농촌·식품으로 확대되면서 농업의 범위와 정책도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전체농가에 대한 평균적인 지원에서 차별화된 정책이 시도되고, 지방자치 정착에 따라 주민 밀착 참여형의 지역개발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농촌 여성의 고학력화는 여성농업인이 스스로 조직체를 구성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하였으며,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대표성 확보와 세력화를 강화시켰다. 여성농업인의 노동참여 증가는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적절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보상체계 마련에 대한 요구의 증가는 물론 건강과 복지 서비스 등의 향상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제2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은 제1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여성농업인 정책의 체계화, 일관성 및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기 계획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여성농업인육성을 지방자치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근거 법령인 「여성농업인육성법」을 개정('05.11.5시행)하여 실효성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은 남녀 농업인이 책임과 성과를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건설하는 것을 비전으로 선정하였다. 농업이 여성의 특성과 자질이 발휘되는 여성 친화적 산업으로 여성농업인은 남성과 함께 책임과 성과를 공유하는 전문직업인으로 농촌은 어메니티가 보전되는 양성평등한 지역사회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위향상, 전문인력화, 여성농업인의 전문화 및 소득지지, 복지 증진 등 5개 핵심과제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향상과 남녀파트너십을 정착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5개의 핵심과제에서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새롭게 등장한 영역은 결혼이민자 여

3) 1990년대 중반부터 서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농촌 어메니티 운동 또는 농촌 어메니티 정책이 유행하면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농촌의 모든 경제적 자원이 농촌 어메니티로 서유럽에서는 농촌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해 정부의 농업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기존의 농촌관광 상품에 농촌의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자는 접근이 시도되면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성농업인 지원, 양성평등의식 확산 14개 사업이 새롭게 추가 되었으며 다음 <표 4>와 같다.

<표4> 제2차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과제별 추진과제와 주요업무

추진전략	추진과제	주요업무
1.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1-1.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의 인정	<input type="checkbox"/> 지위인정 법제화 추진 <input type="checkbox"/> 농업종사 사실 확인규정마련 - 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에 반영 <input type="checkbox"/> 공동경영행위 촉진 캠페인 전개 <input type="checkbox"/> 법률상담지원 활성화
	1-2. 노동보수 확보와 생산수단에 대한 접근성 향상	<input type="checkbox"/> ‘부부합의 경영협약’시범추진 - 대상지역, 농가선정 - 농가교육·지도 및 성과분석 <input type="checkbox"/> 농지 부부공유소유 인정제 및 세제 혜택 제도개선 <input type="checkbox"/> 농산물출하 명의 및 관리통장갖기 확산 <input type="checkbox"/> 연금 수급권 등 기여도 인정 조사연구
	1-3. 여성농업인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여성위촉비율 - 농림부 - 지방자치단체 <input type="checkbox"/> 예비계획서 작성시 여성농업인 참여 <input type="checkbox"/> 여성농업인협의회 운영(단체)
1.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1-4. 여성농업인의 협동조합 참여 확대	<input type="checkbox"/> 조합원가입 <input type="checkbox"/> 대의원 선임 <input type="checkbox"/> 임원 선임 <input type="checkbox"/> 조합내 여성분과위원회 설치
	1-5. 여성농업인의 작목반 참여 촉진	<input type="checkbox"/> 농림사업시행지침 개정 <input type="checkbox"/> 작목반 지원제도 정비 <input type="checkbox"/> 여성 시범작목반 및 작목회 육성 <input type="checkbox"/> 작목반원 전문교육 강화 및 지원 우대

추진전략	추진과제	주요업무
1.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1-6. 여성단체 위탁사업 활성화	<input type="checkbox"/> 농·소·정 협력사업 <input type="checkbox"/> 소비자 농업교육
	1-7. 여성농업인단체 활동지원	<input type="checkbox"/> 회원교육지원 - 농립부 - 농친청 - 농협 <input type="checkbox"/> 사회활동 지원 - 전국대회 - 세미나·토론회·연구활동 <input type="checkbox"/> 우수 여성농업인 포상
	1-8. 국제결혼 이주 여성농업인 적응지원 (결혼이민자)	<input type="checkbox"/>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input type="checkbox"/> 부부 지원 교육, 화합의 행사 <input type="checkbox"/> 상담원 양성 <input type="checkbox"/> 화합의 행사
	1-9. 양성평등의식의 확산	<input type="checkbox"/> 기관·단체별 양성평등교육 확대 운영 <input type="checkbox"/> 여성 이장 마을 실태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input type="checkbox"/> 여성 이장 마을 우대 지원
2.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2-1.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 배양	<input type="checkbox"/> 정보화 교육 <input type="checkbox"/> 영농기술교육 <input type="checkbox"/> 최고농업경영자과정교육
	2-2. 여성농업인 리더쉽 향상	<input type="checkbox"/> 여성농업인 전문강사 요원 양성 <input type="checkbox"/> 여성농정위원 교육
	2-3. 여성농업인 해외 선진농업연수	
	2-4. 후계여성농업인력 육성기반 확충	<input type="checkbox"/> 창업농 후계여성농업경영인 <input type="checkbox"/> 창업농후견인제 <input type="checkbox"/> 농업인턴제 <input type="checkbox"/> 대학생창업연수 <input type="checkbox"/> 한농전 제도개선 <input type="checkbox"/> 농산업계열 학과 신설

추진전략	추진과제	주요업무
	2-5. 여성농업인 노동생산성 향상과 노동 부담의 완화	<input type="checkbox"/> 여성농작업 농기계 개발 <input type="checkbox"/> 농작업 환경 개선 시범사업 - 농작업 보조구 보급(개소) - 농산물 선별작업장 개선(개소) <input type="checkbox"/> 여성용농기계 보급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3. 농업관련산업의 여성농업인 전문화 및 소득지지	3-1. 여성농업인 창업활동 지원	<input type="checkbox"/> 여성농업인 창업지원(개소) <input type="checkbox"/> 고품질 포도가공 시범지원(개소) <input type="checkbox"/>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시범(개소)
	3-2. 농업관련 산업의 여성농업인 전문화	<input type="checkbox"/> 지역개발 리더 교육 <input type="checkbox"/> 농촌관광 체험교사 양성교육
	3-3. 농업계 여성 CEO 육성	<input type="checkbox"/> 협의체 구성 <input type="checkbox"/> 협의체 지원방안 강구 및 지원
4.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	4-1.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의 사회화	<input type="checkbox"/> 농번기 식사 주문배달
	4-2. 여성농업인의 연금 및 보험수급권 확대	<input type="checkbox"/> 기초연구 및 자료수집 <input type="checkbox"/> 관련상품 개발 및 규정보완 연구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분위기 확산 <input type="checkbox"/> 개선제도 시행
	4-3.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의료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와 협의
	4-4. 농가도우미제도 확충	<input type="checkbox"/> 출산도우미 이용료 현실화 <input type="checkbox"/> 출산도우미 이용기간 연장 <input type="checkbox"/> 사고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input type="checkbox"/> 고령취약농가 가사도우미 지원 <input type="checkbox"/> 질병, 교육도우미 지원
	4-5.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확충	<input type="checkbox"/> 센터운영지원 확대 <input type="checkbox"/> 센터 기능개편 조사 연구 및 개선방안 마련
	4-6. 농업인 영우아 양육지원 확대	<input type="checkbox"/> 양육비지원 - 시설이용 - 시설미이용

추진전략	추진과제	주요업무
4.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	4-7. 농어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
	4-8. 여성농업인 문화욕구의 충족	<input type="checkbox"/> 문화프로그램 개발, 서비스 확대 <input type="checkbox"/> 뮤지컬 순회 공연 <input type="checkbox"/> 문화 소모임 지원
5. 여성농업인 정책추진 인프라구축	5-1.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 구축	<input type="checkbox"/> 시·도계획 수립('06 1/4분기)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전담인력 보강 및 정책 개발 기능 강화 <input type="checkbox"/> 협의회 정례화 및 지역협의회체 운영 <input type="checkbox"/> 2차 계획 중간평가 <input type="checkbox"/> 여성정책 담당공무원 교육
	5-2.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제도 확산	<input type="checkbox"/> 평가대상 정책 선정
	5-3. 성인지적 통계의 생산 활용	<input type="checkbox"/> 여성농업인 통계생산·활용방안 강구 <input type="checkbox"/> 여성농업인 실태 조사
	5-4. 여성농업인 정책과제 개발	<input type="checkbox"/> 농림부 정책개발 과제 <input type="checkbox"/> 농자연 전문분야 연구 확대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지역 연구기반 확충

* 제2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시안 재구성(2006년 1월 말 발표 예정)

** 굵은 글씨체는 제2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가운데 신규 선정 사업임.

Ⅲ. 제주 여성농업인 실태

제주도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농가인구가 23%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의 농·림·어업의 취업 분포는 비율을 52%이나 농업 및 임업 대표자 비율은 2003년 1.1%로 공동협업자로서의 여성농업인의 지위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2003년 농림부에 보고된 지역여성농업인 육성 추진 실적과 2005년 여성농업관련 예산 및 추진실적과 2006년 예산안을 통해 지역여성농민의 실태를 살펴보고

자 한다.

1.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강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강화를 위하여 5개 핵심과제 가운데 3개 핵심과제인 여성농업인 경영능력강화 사업은 여성농업인 전문교육훈련과 후계여성농업인육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전문교육훈련의 세부 내용으로는 정보화 교육, 영농기술교육, 전문농업경영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으로 11개 가구에 컴퓨터를 제공하고 정보화 활용 교육을 시키는 등 22,000천원을 지원하였고, 여성농업인 387명에게 전문 기능인 양성교육을 통해 제주향토음식개발, 농산물가공, 원예기술, 생활공예 등으로 10,000천원을 지원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영농기술 향상을 위하여 1,450명 20,000천원을 지원 감귤전문 여성반 교육, 현지순회교육, 전문기능인 양성교육과정을 지원하였으며, 전문농업경영교육을 위하여 여성농업 경영인 교육 1명, 핵심농업기술과제 전문교육 5개소 103,000천원, 최고농(어)업경영자 여성경영반 26명 지원, 농촌여성 생활기술대학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후계여성농업인육성 사업으로 2002년에 2명의 여성농업인을 후계농으로 선정하였으며, 2003년에 전체 33명 가운데 4명(12.0%)를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2005년 예산 가운데 여성농업인 전문반 교육 참석 10명 2,500천원, 여성농업인 영농 기술교육 지원 10,000천원을 편성하였다.

2006년 예산 가운데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1,096천원, 여성농업인 품목별 전문동아리 육성 재료지원 5,000천원, 변화에 대응하는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교육 교재 지원 1,600천원, 여성농업인 영농기술 교육지원 8,000천원, 여성농업인 전문반 교육 4명 1,000천원,

2.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촉진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과 관련 하여 세부사업이 모두 실시되고 있다. 각종 위원회

에 여성참여 확대 사업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권장하는 30%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으나 여러 가지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포함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농정심의위원회의 경우 전체 19명 위원 가운데 여성이 4명으로 21%를 차지하였으며, 농어업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전체 15명의 위원 가운데 여성이 3명으로 20%를 차지하였고, 농어촌진흥기금심의회와 제주도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의 경우 각각 여성위원이 16.7%를 차지하였다.

여성농업인의 협동조합 참여 확대 사업에 있어 여성조합원 수는 2003년 2,708명으로 전체 조합원 51,458명 가운데 24.69%를 차지하였고, 여성대의원은 161명에 11.7%를 차지하였으며, 임원의 경우는 2명에 1.0%를 차지하였다.

지역사회의 특성으로 여성단체 위탁활성화 사업이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어, 국민안전식생활 교육과 홍보활동으로 농촌여성일감 갖기사업 3개소, 78,000천원,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시범사업 1개소, 30,000천원, 전통염색 및 규방 공예품제조 시범사업 2개소, 25,000천원을 추진하였으며, 농촌도시교류 사업으로서 전문연구회 조직 현장체험 활동지원 9회, 387명, 도농교류 체험활동 10회, 34,031명, 여성농외소득원 제품 대도시관측 이벤트행사 4회 53,510명 등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여성농업인 단체는 4개 단체가 있으며 생활개선회 2,080명, 농가주부모임 737명, 여성농민회 120명, 여성농업인 도연합회 100명 등이 있다. 2003년의 경우 전국여성농민회제주도연합회와 한국여성농업인제주도연합회의 단체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하였고, 생활개선회 단체 공동사업과 농가주부모임/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 단체의 교육을 지원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전문직업인 의식고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2003년에 여성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농업인의 날 및 전국여성농업인대회에 여성농업인단체가 참여 지원과 농업인의 날 및 여성주간에 우수여성농업인 30명에게 농림부장관 1명 표창을 비롯하여 농촌진흥청장, 도지사, 시장 군수 표창을 수여하였다.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영유아보육, 방과후 학습지도, 농한기 문화활동, 교양강좌, 도농교류사업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중에 있으며, 농촌정주 여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여성농업인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농림부가 지정한 북군 함덕과 남군 고성여성농업인센터에 각각 95백만원, 제주도가 독립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서귀포시 하원과 남군 사계 여성농업인센터에 각각 120,000천원씩 지원되었다.

2005년 여성농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은 전국 여성농업인 행사참가 보상 10명 2,500천원, 민간 위탁사업으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190,750천원, 여성농업인과 도시소비자 문화 교류 및 농산물 직거래 시범 5,000천원, 농산물 가공시범 2개소 5,000천원,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 2개소 10,000천원, 전통 직물 천연염색 시범 1개소 10,000천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1,096천원, 생활개선과제 교육 4,000천원, 민간위탁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단체 제주 농업발전을 위한 활동지원으로 30,000천원을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실질적으로 추진실적에 있어 여성농업인 센터 5개소 운영에 545,000천원이 지원되었다.

2006년 민간 위탁사업 지원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사업 250,750천원, 여성농업인 단체 제주 농업발전 활동 지원 20,000천원, 향토음식 맥 잇기 시범 2개소 10,000천원, 전통직물 천연염색 시범 1개소 10,000천원, 규방공예 제조 시범 1개소 10,000천원, 농촌여성의 소득원 품질향상 지원 50,000천원 등 기존의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발굴 하였다.

소비자와 함께 하는 제주농특산물 나눔의 장 운영 3,000, 여성농업인과 도시소비자 문화교류 및 농특산물 직거래 시범 3,000을 책정하였다.

3.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2003년 2,666명의 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으로 1,774,0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농가도우미제도⁴⁾의 정착을 위하여 265명의 여성농업인에게 171,000천원을 지원하였다.

과중한 노동부담과 열악한 농작업환경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피로를 조기에 회복시켜 주고 건강증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건강관리실을 3개소(서귀포 강정동, 서귀포 사예 1동, 남군 성산읍)에 설치 161,000천원을 지원하였다. 지역의 특성상 수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3년 잠수어업인 98,033명에

4) 농가도우미는 1일 30,000의 금액 국고와 지방비가 각각 40%를 부담하고 자부담의 비율이 20%이다. 도입 초기 농가도우미의 비용이 24,000원에서 2003년 30,000으로 상승되었다. 농가도우미 지원일수는 30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농가도우미는 출산과 관련되어 지원되므로 지원일수의 확대 및 농촌실정에 맞는 지원 확대가 꾸준히 요구 되고 있는 실정이다.

계 건강검진비용 1,061,000천원을 지원하였다.

2005년 여성농업인 지원 관련 예산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1,033,004천원, 농가도우미 사업에 106,560천원,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4,126,500천원을 편성하였다.

2005년 추진실적은 농가도우미 출산전후 30일 한도 592명에 532,800천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2,955명 2,950,583천원,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⁵⁾ 3,930명 5,502,000천원을 지원하였다.

2006년 여성농업인 관련 예산은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 4,820명 5,046,천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4,000명 793,191천원이며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2개소 증가하여 5개소 125,000천원을 배정하였다.

IV. 제주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

지금까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제1차 추진계획과 실적 그리고 제2차 추진계획안을 살펴보고 지역의 여성농업인 관련 2003년과 2005년 추진실적과 2005년 및 2006년 예산안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여성농업인은 양적 확대는 물론 자질과 능력이 요구되는 질적인 측면의 변화와 함께 여성인력의 활용을 통한 산업 및 국가경쟁력 향상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의 지위 향상 등 사회 변화 흐름에 따라 농업·농촌 발전의 주요 동력으로 성장하고 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성농업인이 52%를 차지하는 지역 여성농업인은 점차 역할이 증대되고 농촌·농업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인력 육성 및 활용 방안이 농정발전의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의 육성 필요성이 대내외적으로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

5) 농어업인 양육비 지원은 농어촌지역 5ha미만의 농가의 농어업인의 영유아 0세~5세 가운데 보육시설아동과 유치원 취원아(보모없는 손자녀, 조카 포함)에게 지원되며 만1세 이하는 월 154,000원, 만2세 127,000원, 만3~4세 79,000원, 만5세 158,000원 범위내 보육료 납부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농어업인 양육비 지원은 실질적으로 보육시설과 유치원 취원아에 한정되어 지원되는 실정으로 실질적으로 농어촌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다. 실질적으로 농가는 도시와 달리 영유아가 보육시설까지 가는 거리를 고려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의 고려가 필요한 실정이다.

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의 변화와 중앙정부의 방침과 달리 지방화시대의 확대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분권과 지방자율이 강조되면서 각종 정책결정과 사업수행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적 변화는 여성농업인정책의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가도우미, 여성농업인센터 등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이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자치단체 수준에서 여성농업인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여성농업인적 관점과 법적·제도적 체계 및 인력이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으로 이에 따른 관련 예산 축소로 정책의 부실화로 이어지게 될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 지역에 맞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여성농업인 육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지역은 현재 농업 관련 성별분리 통계가 생산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여성농업인이 어떤 농업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노동시간이 얼마 인가 등 여성농업인에 대한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여성농업인의 실태 파악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둘째, 여성농업인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정책자문회의의 구성이 시급하다.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여성농업인 육성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정책적 자문과 현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실질적인 여성농업인의 참여가 필요하다.

셋째, 여성농업인 정책의 수립을 위해 여성정책과 등 관계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앙부처의 분권으로 복지 관련 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농가도우미제도, 농업인 양육비 지원, 학자금 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서로 다른 부서에서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업무에 따른 협조가 매우 필요하다. 다시 생각해보면 여성농민이 독자적 정책단위가 되지 못하고 여성관련 부서와 농정관련 부서 등 정책의 주관기관이 나누어짐에 따라 정책을 위한 전담기구

와 전담 인력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의 계속성을 위하여 각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한 과제이다.

넷째, 여성농업인을 정예농업인력 육성정책으로서 주요 정책 대상 집단으로 특화시켜야 한다. 현재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부족은 여성농업인 농업에 대한 발전 기여도와 발전가능성, 연령층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인력개발 정책이 수립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정부와 여성농업인단체의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져야한다. 여성농업인 정책은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고 평가와 개선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관련 단체와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여섯째, 현재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을 파악해 중복된 역할과 사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행정 및 농협 등 민간기구의 농업·농촌여성 지원에 있어 유사한 프로그램이 실시됨에 따라 여성농업인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일곱째, 여성농업인 정책을 위한 제도적 근간과 예산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중앙 정부로부터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법률의 제정으로 여성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이 마련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제도 마련이 미비한 실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 수립을 통해 양성평등한 정책으로 여성농업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덟째, 안정적인 여성농업인을 정책을 위해 무엇보다 가장 운영한 것은 여성농업인과 단체 스스로의 역량강화와 의식 제고를 통해 자신들을 위한 대안의 제시와 예산을 투자할 것을 강하게 요구 할 수 있도록 성장해야한다.

지금까지 여성농업인 육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을 수립하게 위한 제언을 하였다. 여성농업인 육성 계획은 여성농업인을 농촌·농업의 중추 세력으로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드는 기초 작업이다.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 보존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향상, 농촌문화의 변화가 노령화되어가는 농촌에 젊은 세대를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결국 여성농업인 육성 계획은 일회적이며, 이벤트성의 계획에서 벗어나 여성농업인에 대하여 중장기적 차원에서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이 여성으로 하여금 보다 나은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고, 육아, 문화, 교육 등 제반서비스의 확충

을 통해 정주여건의 개선으로 정책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극대화 하는 방안으로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농림부. 2005. 10. 20. 제2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 시안. <http://www.maf.go.kr/>
여성농업인광장
- 농림부. 2005.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중간평가.
- 오미란. 2005. “여성농업인 육성 2차 5개년 계획 정책방향”. 2005 전여농 정책토
론회 자료집. 전국여성농민총연합.
- 이보영. 1998. “여성농업인과 지역농정의 방향”. 여성농민단체공동심포지엄:지역사회
발전과 여성농민의 역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미간행).
- 이정환. 2005. “농업과 여성문제:농정의 여성정책 방향”. 시선집중GSnJ 제5호. GS&J
Institute
- 정영태. 2005. “제2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시안과 제주”지역토론회 발표자
료.(미 간행)
- 제주도. 2005 예산. www.jeu.go.kr/jejunew/contents/newssub.php?mid=841
_____ 1차 추경. www.jeu.go.kr/jejunew/contents/newssub.php?mid=927
_____ 2차 추경. www.jeu.go.kr/jejunew/contents/newssub.php?mid=962
_____. 2006 예산. www.jeu.go.kr/jejunew/contents/newssub.php?mid=958
- 통계청. 농림어업(도별 농업 총수입)/농가소득 및 지출(2003~2004)
- FAO. 1995. “FAO Plan of Action for Woman in Development”. FAO Conference
Twenty-eighth Session 20 October - 2 November.FAO